



“세계적 수준의 종합학술진흥기관으로 도약하는 학진”

한국학술진흥재단

수신자 수신처 참조(연구처장)

(경유)

제목 2005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신청공모 안내

1. 우리 재단은 대학교수의 해외방문연구지원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과 지역연구의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및 연구의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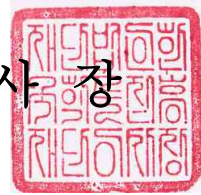
2.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귀교 소속의 우수한 연구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단 홈페이지의 신청요강을 참고하시어 신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내용 및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 → 알림방

→ 공지사항 → 동 사업 신청요강 참조

나. 신청기간 : 2004. 11. 8(월) ~ 11. 12(금) 18:00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수신처 강릉대학교 외 406개교 (이상 총, 학, 원장)

팀원 조은혜

국제협력담당관

전결 10/18

최재동

협조자

시행 국제협력팀-1134 (2004. 10. 19.)

접수 - (2004. . .)

우 137-170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4

/ www.krf.or.kr

전화 (02)3460-5604 전송 (02)3460-5578

/ grace292@ms.krf.or.kr / 공개

2005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신청요강

2004. 10.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협력팀)

I. 사업목적

- 대학교수의 해외방문연구지원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과 지역연구의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및 연구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함

II. 사업내용

1. 사업규모 : 1,979백만원 (중점연구분야 포함)

2. 지원방향

가.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기간별 차별화 지원

나. 특정국가에 대한 편중 지양 및 지역별 특화 전략

- 지역별 배분비율을 설정하여 특정국가 편중 지양
- 특수지역에 대한 체재비 등 인센티브 부여

다. 일반연구와 병행하여 중점연구분야 발굴 지원

※ 중점연구분야는 추후 별도 공모

3. 지원배분원칙

가. 지역별 배분비율 : 북미(50%), 유럽(30%), 기타(20%)

나. 분야별 배분비율 : 인문사회(50%), 자연(50%)

다. 기간별 배분비율 : 인문사회의 경우, 1년(60%), 6개월(40%)

※ 지역별, 분야별, 기간별 배분현황

(단위:%)

구 분	미주(50)		유럽(30)		기타(20)	
	인문(25)	자연(25)	인문(15)	자연(15)	인문(10)	자연(10)
6개월	40	100	40	100	40	100
1년	60	-	60	-	60	-

※ 10% 범위 내의 정책적 차원에서 조정함

4. 지원분야 및 방식

가. 지원분야 : 전 학문분야

나. 지원방식 : 단독연구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5. 지원규모 및 기간

가. 지원규모

○ 6개월 연구 : 1,500만원

○ 1년 연구 : 2,500만원

※ 특수지역 방문연구는 체재비(500만원 이내)를 별도 지원함

나. 지원기간

○ 인문사회계열 : 6개월, 1년 연구

○ 자연계열 : 6개월 연구 원칙

※ 단, 외국학자와의 실질적인 공동연구는 1년 연구 가능

Ⅲ. 신청

1. 신청 방법 :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 지원”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신청 및 연구 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증빙서류를 팩스로 전송함

2. 신청 기간 : 2004. 11. 8(월) ~ 11. 12(금) 18:00까지

3. 온라인 신청 절차

가. 온라인 신청 전

- 1) 해외방문연구기관의 동의서 또는 교환서신(e-mail 가능) 등을 입수함
- 2) 국내 소속대학(교)을 통해 장기해외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함

- 3) 재단 홈페이지 「학술연구자등록」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함 (온라인 신청 중이나 이후에 수정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음)
- 4) 온라인 신청시 연구계획서 파일을 동시에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한글 또는 MS워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단 소정 양식 ([14쪽 양식 참조](#))으로 미리 작성함

나. 온라인 신청

- 1) 연구지원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연구자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사항”을 입력하고, “연구계획서” 파일을 재단 소정 양식으로 작성하여 탑재하여야 하며, 파일 탑재 후 파일탑재결과(PDF File) 확인과 아울러 접수번호를 확인하여야 함 (접수번호는 파일탑재 후에만 볼 수 있으며, 접수번호 확인이 안되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임)
 - 2) 대표업적은 “Ⅲ-4.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가장 우수한 논문을 인문·사회·예술·체육계열은 2편, 자연계열은 3편만 선택함
 - 3) 해외방문연구기관의 동의서 또는 교환서신(e-mail 가능) 등 증빙서류는 재단의 증빙서류 접수서비스(ARS) Fax 접수시스템에 연결하여 (02-3460-5678) 접수시켜야 함
 - ① 안내멘트에 따라 온라인 신청시 부여받은 증빙서류 접수번호(13자리) 및 연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전송함
 - ② 전송결과는 My-KRF 증빙서류보기에서 확인 가능함
 - ⇒ 재전송시 기 전송한 내용은 삭제되고 새로 전송한 내용이 저장됨
- ※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온라인 신청 입력사항의 수정 및 연구계획서·증빙서류 등의 교체가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기간 이후에는 수정 및 교체가 불가하니 온라인 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 온라인 신청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원활한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신청기간 초기에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 온라인 신청기한내 연구계획서를 미탑재한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다. 온라인 신청 후

1) 연구자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력내용(연구계획서 및 증빙서류 포함) 1부를 출력하여 소속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함

2) 중앙관리부서

- 신청자 소속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는 신청자로부터 신청 입력 내용(연구계획서 및 증빙서류 포함) 1부를 제출 받고, **2004. 11. 15(월) 18:00까지** 온라인 신청을 확인하여야 함. 확인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 과제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부서는 제출 받은 입력내용(연구계획서 및 증빙서류 포함) 1부와 신청자 명부를 출력하여 보관함

4.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신청자격 : 국내 대학(교) 전임교원이상의 연구자로 국내 소속대학(교)의 장기해외방문연구 승인을 득한 자

나. 신청요건

-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업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

■ 2000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제 학술지(A&HCI급·SSCI급·SCI급(SCI 및 SCIE 등)) 게재논문, 등록 완료된 외국 특허 또는 전문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 실적이

- 인문·사회·예술·체육계열 : 2편 이상인 연구자
- 자연계열 : 3편 이상인 연구자

※ 단독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함

※ 단,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급 등의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시 작성하여야 함

5. 연구비 신청 및 연구 참여 제한

가. 연구비 신청 제한

- 1)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초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2)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3)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단,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4) 동 사업 기 수혜자로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연구자
- 5)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간과 해외방문기간이 중복되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BK21 사업 포함)

※ 기 수혜 받은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이 종료되어야만 해외방문연구 수행이 가능함

나. 연구 참여 제한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단,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5. 12. 31 이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등을 수행한 경우는 연구 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 미 제출자는 최종 지원에서 제외 조치함

IV. 심사 및 선정

1. 심사절차

단계별 구분		심사내용	비고
1 단계	요건심사	신청자격 여부	재단
2 단계	전공심사	연구계획서, 증빙서류 및 연구업적 심사	패널심사단
3 단계	종합심사	지원과제 선정	국제학술교류증진 위원회

2. 심사방법 및 내용

가. 제 1 단계 심사 (요건심사)

- 1)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심사 (2단계 심사가부 결정)
- 2)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및 요건 저촉여부 등 검토

나. 제 2 단계 심사 (전공심사)

- 1) 심사방법 : 패널심사
 - ※ 지역 및 연구기간에 대한 분리심사(Track Review)를 실시함
- 2) 심사대상 : 연구계획서, 증빙서류 및 연구업적
- 3) 심사내용
 - 타당성, 독창성, 학문발전의 공헌도, 연구내용 및 방법, 선행연구, 연구역량
- 4) 심사항목 및 배점 : 6개 항목 100점 (별첨 참조)

다. 제 3 단계 심사 (종합심사)

- 1) 심사내용 : 전공심사결과 검토 및 지원과제 선정
- 2) 선정원칙 : 심사점수 우선순위와 지역별, 분야별 및 기간별 형평성
(지원배분원칙)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함

-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및 지원에서 제외 조치함
 -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의거, 징계처분·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연구자
 -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징계처분 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연구자
 - 타 기관으로부터 동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연구자
 - 연구계획서 등 제반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연구자
 - 2005. 12. 31까지 출국하지 않은 연구자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재단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V. 연구과제 수행

1. 출국 : 2005. 1. 1부터 12. 31까지 출국을 원칙으로 함

2. 연구기간 : 출국시기로부터 1년(또는 6개월)으로 기산함

※ 단, 2005. 1. 1이전에 출국한 경우 연구개시일을 2005. 1. 1로 함

3. 일시귀국

가. 연구자는 방문연구기간 중 임의로 연구를 중단 또는 일시귀국 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시 및 조기귀국 허용일수(1년 연구자는 30일, 6개월 연구자는 15일) 내에서 귀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자는 사전에 “일시귀국 사유서”(자유형식)를 국내 소속대학(교)을 경유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나. 일시 귀국할 경우, 제반 경비는 연구자 본인이 부담함

4. 연구비 회수 및 제재

가. 연구자가 방문연구기간 중 연구를 중단하고 귀국하거나 일시 또는 조기 귀국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다음과 같이 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연구비를 회수·반납하고 재단의 조치에 따라야 함

- 1) 방문연구 중단 : 재단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기 지급된 연구비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 조치함
- 2) 일시 및 조기귀국 : 허용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이를 초과한 경우 기 지급된 연구비를 일할 계산하여 회수 조치함

나.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재단은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연구자의 소속기관장은 재단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기 지급된 연구비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반납하고 재단의 조치에 따라야 함

- 1)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2)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 3) 잦은 일시귀국 등 연구비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4)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경우
- 5) 연구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 6)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표절을 하였을 경우
- 7) 재단 이외의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과제로 연구비를 이중 지원 받은 경우
- 8)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재단이 정한 의무사항(협약서 및 관리지침, 연구계획서 포함)을 위반한 경우
- 9) 기타 사유로 연구자가 더 이상 방문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5. 연구계획변경 : 연구계획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단, 당초 연구계획서와 동일하나 연구수행 도중(또는 이전) 불가피한 경우 연구계획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VI. 보고서 제출 및 평가

1. 방문연구기간 중 각종 보고서 제출

가. 체재지 도착보고서 : 출국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나. 중간보고서 : 1년 연구자는 출국 6개월경과 후, 6개월 연구자는 출국 3개월경과 후 제출

다. 귀국보고서 :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 제출방법 : 국내 소속대학(교)을 경유하여 공문으로 제출

2.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1)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2)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3) 제출자료

가) 연구결과보고서

나)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다) 연구요약문(국·영문)

※ 국문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

4)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구비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2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 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을 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

나.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1) 최종연구결과물 제출에 대한 책무

- 최종연구결과물은 아래와 같이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하며, 해당 논문 별쇄본, 게재 학술지 또는 출판물을 제출하여야 함

인문·사회·예술·체육 계열	자연계열
-국제적 수준(A&HCI, SSCI급) 학술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전문학술저서	- <u>국외의 국제적 수준(SCI&SCIE급) 학술지</u>

※ 신청시 연구계획서에 게재예정학술지를 명기하고,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였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후 수준미달의 경우에는 경고 조치함

2) 최종연구결과물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함

3) 최종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5-013-과제번호)”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KRF-2005-013-과제번호)”

※ 기타 외국어로 표기할 경우, 상기 내용에 근거하여 표기함

※ 재단이 아닌 다른 연구비 지원기관의 일부 보조 표기 또는 병기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최종연구결과물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최종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거나 학술저서로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게재 사유서를 제출함
 - 미게재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 논문평가결과 D등급과 동일 적용

- 미게재 사유가 합당한 경우 재단의 소정 평가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통과된 과제는 가능한 학술지에 게재를 권장하며, C, D등급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지원을 일정기간(C급 3년, D급 5년) 제한함
- 당초 계획된 연구결과의 미 도출로 논문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구과정 및 결과를 제출 받아 성실성과 적합성을 별도로 평가함

다. 연구결과 사후 관리

- 1) 연구결과논문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
 - 연구결과물의 원문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 실시
 - 연구현황, 통계 등의 제공
-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과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해 국공립대학 소속 교수의 직무발명 관련 산업재산권은 ‘산학협력단’ 또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소유로 함
- 3) 사립대학 소속 연구자가 참여한 연구과제에 의해 취득한 산업재산권도 소속대학의 산학협력단 또는 법인이 소유함
 - 연구자에 대한 보상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의 내규에 따라 처리함
- 4) 연구결과 논문 또는 저서 등에 관한 저작권은 소속기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 표절로 판명되어 징계조치를 요구받거나 징계를 당한 경우 5년간 연구비 신청자격 박탈

라. 연구성과 Follow-up 시스템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보고서, 특허, 기술, 발명, 세계인명사전 등재, 언론보도 등)을 게재하여야 함

VII. 간접연구비 지원

- 동 사업은 간접연구비 지원대상사업이 아니므로 별도 지원하지 않음

문 의 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협력팀

Tel (02)3460-5604 Fax (02)3460-5578

E-mail : grace292@ms.krf.or.kr

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

<별첨>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측정지표	심사내용 (예시)
타당성 (30)	해외방문연구의 타당성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해당국가(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가 ○ 해당국가 counterpart와 공동연구 및 협력이 가능하며, 필요한가 ○ 해당기관의 각종 기자재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한가
독창성 (20)	연구주제의 독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연구(시도)되지 않았던 주제인가 ○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하는가 ○ 새로운 해석이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가
	연구방법의 독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창적인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가 ○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도구)을 시도하는가 ○ 새로운 분석 기법을 활용하는가
학문발전 공헌도 (20)	학문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적 측면에서 해외방문연구가 필요한 분야·주제인가 ○ 기존의 이론을 발전시키는가 ○ 기존의 연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가
	학문의 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국가(지역)의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가 ○ 해당 학문분야가 희귀하거나 소외되어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가
	학문의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국가(기관)에 국내 연구성과 확산이 가능하며, 필요한가 ○ 연구결과가 국내의 많은 후속연구를 파생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가 ○ 연구결과가 교육에 환류될 가능성이 높은가
연구 내용 및 방법 (10)	연구내용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내용 범위가 적절한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가 ○ 포함된 내용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들인가
	연구방법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 자료수집 방법은 적절한가 ○ 자료분석(실험 또는 이론계산) 및 결과해석 방법은 적절한가
	실행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방문연구 수행과정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자료수집, 분석, 해석방법과 도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선행연구 (10)	선행연구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었는가
	인용 및 참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역량 (10)	연구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연구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방문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요건(언어 구사 능력 등)이 충족되는가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 대표논문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질적 수준에 도달하는가

※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측정지표 및 심사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 가능함

연구 계획서

(2005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명	국 문	※ 과제명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시 입력한 과제명과 동일하여야 함		
	영 문			
연구기간	· 1년 ()	방문국가		
	· 6개월 ()	출국일	2005년 월 일	
연구기관명	1.	게재예정 학술지명	1.	
	2.		2.	
	3.		3.	

※ 방문국가는 1개국으로 한정하되, 방문기관은 1~3개 기관을 접촉하여 방문연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을 최종 선택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출국일은 가능한 실제 출국예정 월, 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2005. 12. 31.** 이전에 반드시 출국하셔야 함을 유념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I. 연구계획

※ 이 내용은 참고 후 삭제하시고 작성하십시오.

※ 연구계획은 “심사항목 및 측정지표”를 참조하시어 해외방문연구의 목적·필요성, 내용 및 연구방법, 학문·사회발전에의 기여, 활용방안 등을 자유형식으로 기술하되 총 15쪽 이내(참고문헌 목록 포함)로 작성하십시오. (방문연구기관 동의서 또는 교환서신 등 증빙서류는 15쪽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단의 증빙 서류 접수서비스 Fax 접수시스템에 연결하여 전송하여 주십시오.)

- 참고문헌 목록은 연번, 논문명, 게재지, 권호, 년월만 작성함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Test)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자를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 연구수행계획

연구추진계획

년 월 일	연구수행내용	비고

연 구 업 적 요 약 문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 제목

업적 구분

저서() 역서() 학술지() 외국특허()

연구 참여자수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

(특허의 경우 출원일, 출원국가 및 내용 등을 기재)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에 대하여 각각 작성하십시오.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마십시오.